

공정거래법

- 규제와 보호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

2004. 11

재단법인 여익도연구소

「ISSUE BRIEF」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 실린 내용은 HOT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한나라당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요 약

□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 경제살리기 · 기업살리기 차원에서 법개정 검토

-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이 극심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은 대기업의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친재벌, 반재벌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살리기, 기업살리기 차원에서 법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기업투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 현 정부 ·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경제침체 가속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의 어려움,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계적 폐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현행유지, 계좌추적권 재도입 철회 등의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계적 폐지

- 총액출자규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제약하고,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기존의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 원활화에 주력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현행유지

- 세계적인 산업·금융간 융합 및 탈규제 추세에 역행하고,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기업의 방어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은 강화함

계좌추적권 재도입 반대

- 부당내부거래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에 의해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계좌추적권의 실효성이 미미하며, 금융실명제법과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일몰조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과 기업의 경영위축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재도입되어서는 안 됨

신고포상금제 도입 반대

-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해 법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고, 신문시장을 겨냥한 명백한 언론탄압용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 됨

□ 공정거래정책의 선진화방안

○ 기본방향

- 그동안 공정거래정책은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 잡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무한경쟁의 개방경제시대에 맞게 산업화·민주화 시대의 '규제와 보호' 위주에서 '자유와 경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진화되어야 할 것임

○ 선진화방안

-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방경제시대에 맞게 경쟁촉진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선진적인 「경쟁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도록 함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 규제조항은 상법·세법·증권거래법 등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 특히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 경쟁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주는 역차별적 성격이 강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공정거래법은 순수하게 경쟁촉진 정책을 기본으로 함

목 차

I.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1. 법개정 동향 /1
2.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 /3
3. 바람직한 개정방향 /10
 - (1)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문제 /9
 - (2)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문제 /18
 -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제도입문제 /24
 - (4) 신고포상금제 도입문제 /28

II. 공정거래정책의 선진화 방안

1. 공정거래정책의 변천 /30
2.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31
3. 공정거래정책 선진화의 기본방향 /34
4.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방안 /37

I.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1. 법개정 동향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안으로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실천에 옮긴다는 명분으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시장경쟁의 제고 등 시장개혁과제들을 중심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4. 6. 23)
 - 정부안의 주요골자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졸업기준 및 적용제외·예외인정의 변경 ▲금융정보 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허용범위 축소 ▲지주회사제도 보완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등
-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2004. 8. 9)
-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당초 정부안의 “2008년까지 15%까지 인하” 부분을 “2007년까지 20%까지 인하”로 수정하자는 부대의견을 내놓음(2004. 9. 14)

-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는 9월 15일, 16일 양일간 처리강행과 불가로 첨예한 갈등을 빚음
- 국민여론을 의식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종료후 공청회(10. 25)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기로 합의함
- 한나라당은 법에 의한 규제에서 시장에 의한 규제형태로 전환하고 국내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에서 출자총액제도 폐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유승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10.8)
 - 주요 골자는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부당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내부거래 규제기준의 강화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선 및 사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등으로 정부·여당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춤

2.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

- 그동안 법 개정 심의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친재벌당’으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을 ‘반시장·반기업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야간 치열한 대립 양상을 보임

<표 1>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 비교

쟁 점	현 행	정부·여당	한나라당
출자총액 제한제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	• 유지 (다수 예외조항 신설)	• 폐지 (처벌규정 보완)
계좌추적 권	• 2004. 2. 4 유효 기간 만료	• 3년 시한으로 재도입	• 재도입 반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 30%까지 의결권 행사	•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 축소	• 현행 30% 유지
신고 포상금제	• 공동행위제보자 보상금지급을 내부지침으로 운영	• 신문경품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 기업간 부당공동 행위에 한해 도입

(1) 출자총액제도 유지문제

【현행】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개정안】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장치를 잘 갖춘 기업,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 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물출자·영업양도·물적분할·분사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10조 제1항 본문, 제10조 제7항 제2호 및 제4호)

【정부·여당】

- 재벌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기업의 내부설비투자 등 기본적인 투자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예외조항이 많이 추가되어 규제가 다소 완화됐으며,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3년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한나라당】

- 투자위축이 극심하고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만 집착하는 현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 및 관련 법조항 등을 모두 폐지하고 타회사 출자의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장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2)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문제

【현 행】

-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장·등록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에 대해 결의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현행 30%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p

씩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함(안 제 11조제3호 및 안 부칙 제9조)

※ 열린우리당은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2007년까지 20%까지 축소하는 부대의견 첨부

【정부·여당】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고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한도를 제한하지만, 국내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는 현실적 측면과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

【한나라당】

-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축소하려면 정부는 먼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설정에 대한 명확한 비전부터 제시해야 하며,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연기금, 산업은행 등의 주식투자, 사모펀드 투자 등)으로 보유한 기업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려고 하면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것은 큰 모순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제도입문제

【현 행】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1999년 2월 2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고, 그 후 2001년 1월 법개정을 통해 그 유효기간이 2004년 2월 4일까지 3년간 연장되었으나 현재는 기한만료로 폐기된 상태임

【개정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금융계열사 등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4일로 시한이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함
(안 제50조제5항 내지 제9항 신설, 안 부칙 제2조)

【정부·여당】

-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중 87%가 금융계열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한나라당】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기업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발견되는 등 남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의 재도입에 반대하며, 또한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현행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현행 규제의 적절성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4)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문제

【현 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동행위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내부지침으로 운영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보당시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3 신설, 정부안)
-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4조2 신설, 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정부·여당】

-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인력만으로는 인지·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시장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

【한나라당】

-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으며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신문시장만을 겨냥한 법으로 언론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

3. 바람직한 개정방향

【기본방향】

- “기업이 곧 나라다”
 - 현 정권은 “기업이 곧 나라이고, 기업 상품이 나라를 대표한다”고 말하지만, 국내 상황은 각종 규제와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불안감

이 높아지는 등 기업의 기(氣)를 죽이고 발목을 잡는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현재와 같이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반시장적 기업규제와 반기업적 사회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달성은커녕 '1만 달러의 덩'에 걸려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중남미 국가로 추락할 것임
-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규칙제정자(rule setter)서 기업 활동에 대한 직접규제는 최소화하되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하여 경쟁과 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임

○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접근

-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은 「親재벌-反재벌」, 「親시장·親기업-反시장·反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한 이념적 대립양상에서 벗어나, '경제살리기', '기업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개방경제시대의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개정방향】

(1) 출자총액제도 유지문제

<현 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다단계 출자로 과도한 소유지배권 괴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도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동 제도를 유지하되, 다양한 졸업제도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제의 예외인정 요건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 2004. 4. 1 현재 자산총액 5조원이상 22개 기업집단 가운데 18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속계열사수는 378개이고 자산총액은 426조 4,540억원임

-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롯데, 포스코 등 4개 기업집단은 부채비율 100%미만을 이유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됨

<문제점>

- 신규투자를 저해
 - 기업의 출자는 출자대상기업에 대해 지분참여 등을 통

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해주거나 신규투자를 위한 사전 단계로 활용되지만 출자총액제한이라는 사전적 규제가 기업투자의 상한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의 신규투자가 저해됨

- ※ 전경련의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보고서(04. 10. 24)에 의하면 총 자산 5조가 넘는 출자규제대상 13개 기업집단의 329개 계열사중 42개사에 대한 조사에서 출자규제로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업은 39개사이고, 투자애로 사례는 61건이며, 투자차질 금액도 7조 1,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영권 방어가 곤란

- 국내 주요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해 추가출자여력이 없는 기업집단은 계열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음
- ※ 2003년 12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0.1%에 달함
- ※ 1998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적대적 M&A의 전면적 허용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하는 것도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것임

○ 신성장 동력 발굴에 대한 어려움

- 출자나 기업인수는 기업이 미래 수익사업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출자규제로 인해 신성장 동력 발굴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제약을 받게 됨

※ 미국의 GE는 1980년대부터 10년 동안 활발한 기업인수(383개)와 기업매각(232개)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역동성을 높임

<개정방향>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소유 지배의 괴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으나, 이런 문제들은 기업내부의 지배구조와 시장의 감시 및 규율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또한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기업의 보수경영을 심화시켜 투자를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 신성장 기업의 출현을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함

○ 기업의 내·외부건제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라

- 특히 외환위기이후 강력히 추진된 기업개혁의 결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권 강화, 회계투명성 제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등 기업의 내·외부건제시스템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소유지배구조의 괴리에 따른 폐단도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통해 막도록 함

○ 국내의 좁은 시각으로 보지마라

- 우리 기업은 외국 일류기업에 비해 매출이나 이익규모에서 크게 떨어지며, 좁은 국내시장의 시각으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출자행위 자체를 획일적으로 사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한국을 제외하고는 출자한도를 사전 규제하는 경우는 없음

※ 미국과 영국은 80년대부터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일본도 90년대 후반부터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지주회사 금지조항 폐지(1997년), 한국의 출자총액제한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제한 규제 폐지(2002년) 등의 규제개혁을 단행함

- 출자에 대한 사전규제는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출자한도를 현

행 25%를 3년 한시적으로 50%로 상향 조정한 후 완전히 폐지하도록 함

<표 2>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규모 격차

(단위:백만달러)

구 분	해외기업(A)		국내기업(B)		매출비교 (B/A)
	1위 기업	매 출	1위 기업	매 출	
전기전자	IBM	81,186	삼성전자	33,748	40%
자동차	GM	186,763	현대자동차	21,940	12%
철강	신일본제철	19,461	포철	9,771	50%
화학제약	Merck	51,790	LG화학	4,526	9%
소프트웨어	MS	28,365	SDS	1,292	5%
소비재	P&G	40,238	제일제당	1,891	5%

자료: Hoover OnLine, Kis-Line(한국 매출은 대달러 환율 1200.4 기준)
출처: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2004, 삼성경제연구소

<표 3>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

구 분		주 요 내 용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선임의무화(자산 2조원 이상 1/2, 기타 1/4)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 1% 이상 보유 주주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감사 및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제도 신설 •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2/3이상 사외이사 구성) • 감사위원회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이내로 제한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로 선임
소수주주 권한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화된 요건: 대표소송 0.01, 이사 및 감사 해임 0.5(0.25), 위법행위유지 청구 0.05(0.025), 회계장부열람 0.1(0.05), 집중투표 청구 1, 사외이사 추천 1(0.5) ※ ()내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적용
	집중투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2조원 이상 '05. 1, 기타 '07년 시행
회계 투명성 제고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공시제, 자본금 10% 이상 타회사 출자 채무보증 공시, 유가증권 신고시 예측정보 고시, 분기보고서제 내부거래 공시,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강화 등
	회계 및 외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그룹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감사인, 회계관리인 민·형사책임 강화 •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 민간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 • 부실감사에 대한 행정상 제재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대주주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이사등제, 이사의 충실의무, 업무집행 지시자를 사실상 이사로 규정, 회사정리 원인제공 주주의 주식소각, 이사회이사록 기재요건 강화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허용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의무공개 매수제 폐지

자료: 『시장개혁 로드맵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 2004-03, 2004.9.14

(2)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문제

<현 황>

-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제도는 1986년 12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하나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도입되었으나,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2002년 1월부터 의결권 행사 금지를 완화하여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에 대해 결의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5%까지 축소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대기업집단이 금융자본까지 지배할 경우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문제 발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경제력집중 심화 및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임

<문제점>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능력 저하
 - 외국자본의 주식투자비중이 40% 이상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한도가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된다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음
 -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16.5%인 반면, 외국인의 지분율은 3.5배나 많은 57.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담합을 하면 적대적 M&A가 가능해지고, 또한 의결권이 15%로 제한될 경우 삼성그룹의 의결권을 16% 수준으로 1%p 늘리는 데는 약 4조원의 자금이 소요됨
- 보수안정 위주의 경영 조장
 - 단기실적과 안정위주의 경영조장, 경영권 방어비용 증대에 따른 자원낭비, 국내 주력기업의 해외이전 고려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투자 위축, 성장기반 저하,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는 이중규제
 - 출자총액제한으로 국내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주식취득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다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성격을 지니게 됨

○ 금융시장 변화추세에 역행

-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탈규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만성적인 금융자금 초과수요 상태였던 과거와는 달리 외환위기이후에는 기업들은 내부유보자금이나 직접 금융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국내 금융시장도 소매금융시장이 중심이 된 수요자 시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한다는 우려에서 의결권 행사를 축소하는 것은 국내외금융변화 추세에 역행하는 일임

○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 의결권 행사한도 제한 등 경제력집중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강화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영 유연성과 경영선택의 입지를 좁힘으로써 경제 인프라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임

○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에 대한 규제는 향후 대규모 정부소유의 금융기관 매각시 외국자본과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에 의한 저

가 매각입찰을 초래하게 되어 공적자금 회수율을 낮추고
나이가 국부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음

<개정방향>

○ 적대적 M&A의 방어를 위해서는 현행유지가 필요하다

- M&A가 가능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3분의 2(약 67%)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으로 30%정도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M&A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2002년 법개정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30%까지 허용하였으나, 이를 축소할 경우 적대적 M&A의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차등의결권제도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있지만 이것은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기존 주주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며 또한 자유로운 M&A를 가로막아 시장효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편법적인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보다는 우선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이나 축소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함

<표 4> 다양한 기업경영권 방어수단

이름	내용
차등의결권제 (dual class share)	대주주에게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황금주 (golden share)	이사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독약조항 (poison pill)	이사회 의결만으로 신주발행을 허용하여 적대적 M&A를 방지하는 제도
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e)	적대적 M&A로 기존 경영진이 퇴직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이사임기분산제 (staggered board)	정관에 매년 일정비율로 이사진이 순차적으로 바뀌도록 규정
냉각기간 (cooling-down pill)	경영권 취득을 위해 대량매집한 주식의 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다

- 세계적인 산업·금융간 융합추세, 외국계 금융기관의 본격적 진출 등의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위축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산업자본의 금융업 소유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금융기법 도입 및 경영능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의 경우 GE, GM, SONY, TOYOTA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또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일부 강소국들은 오히려 금

용회사로 하여금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 ※ 일본의 경우 상법(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상호주식 소유의 경우 25%까지만 의결권 허용)과 독점규제법(자본 350억엔 이상, 순자산 1400억엔 이상 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취득 및 소요제한)을 제외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상법에 의해 설립이 허락된 회사는 자본금의 전액 납입과 등록을 전제로 은행업 면허 신청이 가능함(은행주식의 25%까지 소유 가능)

○ 시장의 자율적 견제장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금융보험회사의 자금운용에 있어서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금융감독 차원에서의 규제와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견제장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
- 현행 금융관계법령은 금융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현행 공정거래법이 대주주와의 대규모 거래시 공시 및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 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등 다양한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필요함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문제

<현 황>

-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은 외환위기 이후 '99년 2월 부실계열사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계열기업과 독립기업간 공정경쟁 촉진 등의 목적으로 30대그룹에 한해 2년 한시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01년 1월 법개정을 통해 그 유효기간이 2004년 2월 4일까지 3년간 연장되었으나 현재는 기한만료로 폐기된 상태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필요성과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려고 함

<문제점>

- 금융실명제 입법취지에 정면 배치
 -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는 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의 입법취지에 정면 배치되며, 한시적인 일몰조항으로 규정된 공정거래법의 당초 입법취지와도 상충됨

※ 처음 도입당시에도 계좌추적권이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금융실명제법의 입법취지와 상충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2년 한시적으로 인정되었음

○ 계좌추적권 재도입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도입될 경우 금융자료를 열람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조사요건이나 적법한 절차가 미흡하여 계좌추적에 대한 공정위의 권한남용이 우려됨

○ 계좌추적권의 실효성이 미미

- 지금까지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서 적발한 거래내용 중 실제 계열사에 지원한 금액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고, 기업내·외부건제시스템이 마련됨으로서 사실상 내부거래가 근절됨에 따라 계좌추적권의 실효성이 거의 없음

※ 계좌추적권 도입된 1999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부당내부거래 중 지원성 거래규모는 전체 28조 7,917억원 중 6,043억원(2.1%), 지원금액은 전체 8,900억원 중 298억원(3.3%)이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전체 2,863억원 중 204억원(7.1%)으

로 계좌추적권을 통한 적발 금액의 비중은 극히 낮으며, 계좌추적권 발동회수도 '99년 13회, 2002년 1회, 2003년 1회로 급감함

<개정방향>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제도입되어서는 안된다
 - 부당내부거래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에 의해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계좌추적권의 실효성이 미미하며, 금융실명제법과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일몰조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과 기업의 경영위축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제도입되어서는 안 됨
- 부당지원행위는 세제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계열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는 이미 세법과 금융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는 이중규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내부거래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기업지배구조와 과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공정위는 경쟁정책 차원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명령권 및 영치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등 기존조사권을 최대한 활용

하고, 필요하다면 이미 계좌추적권을 가진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다른 정부기관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상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도록 함

○ 부당내부거래는 기업의 내·외부견제시스템에 맡겨야한다

- 지배주주의 경영책임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및 대형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증권집단소송제 및 주주대표소송제의 도입, 적대적 M&A 허용 등 기업에 대한 내·외부견제시스템이 도입되어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4) 신고포상금제 도입문제

<현 황>

-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현재 내부지침만으로 운영중인 부당공동행위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는 반면, 문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해 위반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정부개정안과 문학진 의원의 개정안은 개정 조항들간에 중복과 충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 문학진 의원

개정안의 경우 신문분야에만 대부분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개정방향>

- 문학진 의원의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며, 나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중에서 신문판매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예산(50억원)이 전체 예산(55억6,400만원)의 약 9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명백히 신문시장을 겨냥한 언론탄압용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 됨

※ 개정안에 첨부된 예산명세서에 의하면, 포상금제도 도입 시 ▲부당공동행위 제보 포상금 2억원 ▲부당지원행위 제보 포상금 5천만원 ▲신문판매시장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 포상금 50억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대규모 소매점 고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2억 1,400만원 등 총 55억6,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II. 공정거래정책의 선진화 방안

1. 공정거래정책의 변천

- 1975년 당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입법화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은 1980년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책이 도입되고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재벌그룹에 대한 규제제도로 정착·강화되었음
- 1970년대에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용할당 등을 통한 산업정책적 지원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기업의 공개를 유도하고 과도한 차입경영형태를 교정하기 위해 여신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둠
-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단순한 기업의 재구조 개선과 기업공개유도 차원을 넘어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한도 설정, 지주회사 설립 금지, 순자산 40% 이내의 출자총액제한, 내부거래 규제 등 재벌그룹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정책들이 도입됨
- 1990년대에는 대기업이 업종다각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30대그룹에 대한 업종전문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스탠더드 맞는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 200% 부채비율 규제, 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재벌그룹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들이 추가 됨

- 지금까지 공정거래정책은 한편으로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질서를 바로 잡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하는 등 부작용 또한 많았기 때문에,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산업화·민주화 시대의 ‘지원과 규제’ 위주에서 개방경제시대에 맞는 ‘자율과 경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진화되어야 할 것임

2.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 정책목적의 혼재와 자의적 운영
 - 공정거래법의 목적에는 경쟁정책 외에도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등 정책적 판단과 조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목표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정거래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이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한편 경제력집중 억제정책도 시류에 따

라 업종전문화, 지배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변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책목표 없이 운용해왔음

○ 개방경제시대에 부적합

- 글로벌경제시대에서 우리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국내기업을 역차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여 국가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 기업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주변국과의 경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방경제시대에 부적합한 법임

○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

-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 공정거래법은 투자 위축, 기업가정신 쇠퇴,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력 억제정책의 실패

- 그동안 공정거래정책의 핵심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었지만, 실제 30대그룹의 자산집중도, 평균계열사수 등을 고려하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도리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경쟁촉진을 방해하고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역효과만 초래함

○ 기업의 하향평준화를 조장

- 60~70년대 산업화시기에는 대기업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보호와 지원을 받아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80년대 이후 민주화시기에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선되면서 대기업이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규제받고 역차별 받는 상황이 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인해 기업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하고 있음

○ 규제와 보호의 이중적 정책기조

- 지금까지 정부는 한편으로는 재벌을 통제하기 위해 자금조달, 투자, 사업구조 등 기업의 전략적 결정사안에 까지 직접 규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을 보호 지원하는 이중적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고 정부의 과대한 개입을 초래하여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폐단을 낳았으며 시장구조의 경쟁화는 물론, 경제력집중 억제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지 못함

3. 공정거래정책 선진화의 기본방향

- 「규제·보호」에서 「자율·경쟁」으로 패러다임 전환
 -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은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는 「보호·지원」 위주였다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억제·규제」 정책으로 변했으며 이제 개방경제시대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율·경쟁」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제력집중억제정책'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정책을 재정립함

- 시장경쟁 촉진에 정책역량 집중
 - 기업의 활력회복,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규율 효과를 왜곡시키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대폭 수정하고,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나 담합 등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경쟁력 제고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도록 함

- ※ 최근 OECD 보고서(2004)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규제를 금융 및 자본시장 감독기구에 맡기고 경쟁정책에 집중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심각한 독과점 폐해를 보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독과점 방지책을 제안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질적 전환

- 경쟁정책의 기본 시각은 기업의 크기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개별시장에서 독·과점력의 부당한 행사라는 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경제력집중에서 파생하는 폐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규제해야 할 것임

○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

- 개방경제체제에서 국내외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외환위기이후 기업개혁을 통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제도·의식·관행 면에서 시장참여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장의 각종 경기규칙을 제정·보완·개혁하는 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보다 자유롭게 각자의 특장을 살려 다양하고 차별화된 생존전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획일적이고 사전적 규제를 지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집중함

○ 제도와 정책의 신뢰성 제고

-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동시에 정책의 운용 및 집

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정부의 재량권과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임

4.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방안

- 공정거래법의 법명을 「경쟁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본의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제목과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임
 - 공정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경쟁촉진과 상품시장의 경쟁여건을 규정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쟁’개념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경쟁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도록 함
- 법의 목적을 경쟁촉진으로 일원화
 - 현 공정거래법에는 경쟁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경제력집중 방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 불분명하고 사회정책적인 목적이 혼재되어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쟁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움

- 또한 경쟁의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경쟁자나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강조하게 되면 경쟁 자체를 훼손하게 되어 기업들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임
-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그 지향하는 목표를 경쟁촉진으로 일원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타부처로 이관

-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경영전략, 사업영역에 따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차별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함
-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분제한, 출자제한, 의결권제한, 부채비율 유지, 채무보증 등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구체적 수단들은 대부분 소수지배구조와 금융건전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타부처로 이관하도록 함

○ 기업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규정을 분리

-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을 통하여 상품시장에서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 공정거래법

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혼재되어 있음

- 기업의 지배구조는 공정거래정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 공정거래법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금융 및 자본시장의 규제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위임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도록 함
- ※ 미국, 영국, 독일, EU 등 해외선진국의 공정거래법은 상품시장의 경쟁촉진만을 권장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해당 전문기관에 일임하고 있음
- ※ 유일하게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던 일본도 2002년에 이를 폐지하였음
- 산업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타부처로 이관
 -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경쟁정책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상반될 수 있는 산업정책적 고려를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경쟁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무관한 산업정책적인 내용을 타부처로 이관하도록 함

○ 경쟁촉진정책을 강화

- 공정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입법취지인 시장규율과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행사를 막고 경쟁제한적 행위를 방지하며 이를 규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 개별시장에서의 수평적 시장지배력의 남용과 경쟁제한적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선수단으로 기업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기준을 경쟁 및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합리의 원칙 적용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경쟁제한 행위와 경쟁행위를 구분하여 경쟁촉진적 규제를 실시함

○ 경쟁정책 집행의 중립성을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닌 전문적인 규제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위해 그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함
-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공정위의 연구기능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사소(私訴)와 사적 금지청구권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함